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. 14 선고 2020나1981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. 14 선고 2020나19813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2. 11 선고 2019가단5156949 판결

전 문

원고,피항소인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새미로 담당변호사 김성진

피고,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림 담당변호사 홍진현

변론 종결 2020. 12. 8

판결선 고 2021. 1. 14

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2. 11. 선고 2019가단5156949 판결

주 문

1.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
2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3.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청구취지: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17. 2. 6. 체결된 매매계약을 12,132,24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
피고는 원고에게 12, 132,249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.

항소취지: 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16. 8. 30. C와 사이에, 보험금액 10,000,000원, 보험기간 2016. 8. 15. 부터 2018. 8. 14.까지,C의 D 주식회사(이하 'D'이라 한다)에 대한 수수료 반환채무를 지급보증하는 내용의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(이하 '이 사건 보험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 하였다.

나. D은 2017. 5. 23. 원고에게,C가 모집한 보험계약의 해촉 전후 모집계약의 무효,취소 및 책임보상,미유지 등 C에게 지급된 수수료 76,793,980원에 대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를 하였다.

이에 원고는 2017. 6. 28. D에 보험금 10,000,000원을 지급하였다.

다.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123101호로 위 보험금의 지급에 따른 구상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. 6. 5. 'C는 원고에게 10, 197, 260원과 그중 10,000,에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'는 지급명령이 내려졌고,그 지급명 령은 2018. 8. 2. 확정되었다.

라. 한편 C는 2017. 2. 6.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(이하 '이 사건 매매 계약'이라 한다), 다음날 그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2, 3, 5내지 11호증의 기재,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해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,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,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,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(대법원 2002. 4. 12. 선고 2000다43352판결 등 참조).

살피건대 갑 제1,6, 10, 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,즉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2017. 6. 28. D에 보험금 10,000,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였으나,이 사건 보험계약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16. 8. 30. 체결되었고, C가 모집한 보험 계약들의 보험료가 이 사건 매매계약 시점을 전후하여 연체되기 시작하여 그 무렵 위 보험계약들이 실효되거나 해지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,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,그 채권의 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,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.

나. 사해행위 성립 여부

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그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 지 부분만이고,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(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7다10864판결 등 참조).

살피건대 갑 제2, 12호증, 을 1, 3호증(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기재, H조합의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,즉① 2017. 2.경 이 사건 부동산의

매매가격 평균은 하위 257,500,000원,상위 285,000,000원이었고, H조합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7. 3. 30. 기준 자체 감정가는 270,000,000원이었던 점,②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, E 주식회사 명의로 2015. 12. 3. 설정된 채권최고액 259,200,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피고 명 의로 2016. 12. 23. 설정된 채권최고액 100,000,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 었던 점,③ E 주식회사의 위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2017. 3. 30. 223,556,891원에 이르렀던 점, ④ 피고는 2016. 12. 23. C에게 최대 150,000,000원을 이자 연 25%, 변제기 2017. 3. 15.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그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 이는 점(원고는,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서 무효 라고 주장하나,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),⑤ 피고는 C에게 2016. 12. 26.까지 합계 121,532,000원을 대여하고,2016. 12. 26. C로부터 31,000,000원을 변제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C에 대하여 90,532,000원(= 121,532,000원 - 31,000,000원)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,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넉넉히 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,당시 이 사건 부동 산은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공동담보가 될 수 없는 재산에 불과하였고, 이를 양도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.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.

3.결 론

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.

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정 원판사 김유성판사 최은주

별지